

##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9. 9. 23.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9. 28.

다. 상정일자 : 제1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상정, 토론 및 검토

제3차 본회의 상정, 검토 및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동두천경찰서가 개서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우리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포함되도록 하고 또한 조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일부 명칭 변경(안 제3조제3항)
  - 양주경찰서장 → 관할지역 경찰서장
  - 동두천양주교육장 → 관할지역 교육장
-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의 일부 명칭변경(안 제6조제1항)
  - 총무과장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 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 관할지역 경찰서 경비과장 → 관할지역 경찰서의 작전 및 운용업무 담당과장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동두천경찰서가 개서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우리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포함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과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의 명칭이 변경하여도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같은 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